

산업 게시판 5/1/2014 – 요양원/재활 센터

캘리포니아주 미용국 (미용국)은 캘리포니아주 비즈니스와 전문직 코드의 10 장, 3 부, 2 항, 7317 절에 의거하여 미용업 (손톱 및 피부관리 포함), 이발업 또는 전기 분해 요법에 종사하는 개인, 회사 또는 법인은 보상을 위해 미용국이 발급하는 **설립 라이선스**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허가자 및 소비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. 요양원 및 재활센터도 여기에 포함되나 포함 범위가 요양원 및 재활센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. 또한 이런 서비스는 **미용국에서 면허를 받은 전문가들만이** 할 수 있습니다.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당신이 이발 및 미용 (손톱 및 피부 관리 포함) 행위를 하는 경우, 당신에게 1 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 추가적으로, 지속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찰관에 의해 경범죄 소환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.

캘리포니아주 미용국은 캘리포니아주 비즈니스와 전문직 코드의 10 장, 3 부, 2 항, 7317 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법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. 고객의 질병 또는 신체적, 정신적 장애로 인해 허가된 시설을 벗어난 외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이 예외 사항은 미용국에서 면허를 받은 전문가가 미용국이 면허를 준 시설에서 현재적으로 일해야 하고 제공한 서비스는 허가된 시설의 예약 로그에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미용국의 검사관이 요구하는 경우, 예약 로그는 제출되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